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

( 황준환 의원 발의 )

의안 번호	12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6월 3일  
발 의 자 : 황준환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창수, 문영민, 강성언,  
김문수, 박호근, 남창진,  
유 용, 김생환, 김춘수,  
박마루, 우미경, 이명희,  
진두생, 최호정 의원(14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의안 제출과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비용추계를 첨부해야 할 대상과 예외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비용추계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의 기준을 규정함(안 제4조와 제6조).
- 라. 비용추계서 작성 주관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 등을 규정함(안 제7조).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

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비용추계서”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(이하 “비용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“비용추계”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)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비용추계의 상세내역,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

합되어야 한다.

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.

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(相計)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,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.

제5조(비용추계의 기간)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,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.

제6조(재원조달 방안의 작성)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,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, 기타이전수입, 자체수입, 지방교육채,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소관부서 및 제출시기)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동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.

④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○○○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2. 비용추계의 전제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							
	○							
	소계(a)							
세출	○							
	○							
	소계(b)							
□ 총 비용(a-b)								

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국비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						
	세외수입							
	지방채 등							
		민간						
		기타						
		합계						

## 5. 덧붙이는 의견

## 6. 작성자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 작성요령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.
2. 비용추계의 전제 :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, 비용추계기간,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.
3. 비용추계의 결과 :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,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.
4. 재원조달 방안 : 중앙정부이전수입,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, 기타이전수입, 자체수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5. 덧붙이는 의견 :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.
6. 작성자 :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.

#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,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.

○○○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3. 미첨부 사유

(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)

4. 작성자



## [별첨]

###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

#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접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함.

#### 3. 미첨부 사유

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##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의회 황준환 의원(3783-1791)